제 1885 호 1995. 3. 17.

전 화: 731-6111~3 쇄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 전 화: 273-8111~3



차 례

	조		1									
•	_		" 서울	특별시주기	사장설치	및관리조	레중개:	정조리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***********		2 ⁻
@	고	Į.	i									
	쟤]	995-69	호광	공기관부	실주차기	웃 료유	영계시			· · · · · · · · ·	•••••	
	-		ing sign			z. zi						
	공		2		م دنادها			. و د نو.	أأوساديد أأفقا ودر	5 Alar =		
	.제 .	995-78	<u> </u>	시계확시	·업(성내	역주차진	건설공	사)설시:	계곡 인가	불위한경	·함중고	8
Γ.					T	<u> </u>						
-	를 .		Ĺ									
Ē	활											

- 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- 2.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조 레

서울록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주 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하다.

> 1995, 3, 17 서울특별시장 최병렬 ⑧

· ⑥서울특별시조례제3167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
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를 제14조의3 내 지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2 및 제14조 의6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 준 등)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가준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기재된 당해 토 자의 평가금액으로 한다.

제14조의6(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에의 제공) ①서울특별시·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 다)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·유료 이용시간·이용대상차량·기타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 하다.

제18조를 삭제한다.

재20조재3항 중 "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

규정에 의한 파세시가표준액을"을 "지가공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 가뭄"로, "100분의 20"음 "100분의 5"로 한다.

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보

- ②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 차장특별회계(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 계설치조례의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)로 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.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 치신고를 한 자로써 입체식(건물식 또 는 기계식)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자
- 2.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회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제21조제2항 중 "제1항"을 "제1항제1호"로, "3배"를 "2배"로 한다. 제22조제1항 중 "다음 각호의"를 "시장이 정하는"으로 하고, 동조 계1호 내지 제4호 물 삭제한다. 〈별표 1〉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뵨 최

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3조제1항 관련)

1									
		노 상	노외주차장						
	2시간	가지	2시간초과		1회 주차		1일	월정기권	
구분	1구획	1구획	1구획	월정기권	1구획 1구획	^{사일} 주차권	권 주간	야간	
	최초 30분	15분	15분		최초30분	15분	7-7-10	ተላ፤	0F2I
1급지	2천원	1천원	2천원	•	1천600원	800 श	•	20만원	10만원
2급지	1천원	500 શ	1천원	•	1천원	500원	•	12만 원	6만원
3급지	400원	200원	400원	•	300 શ	150원	•	4만원	2만원
4급지	200 શે	100원	•	3만원	200원	100원	2천원	1만원	•

비 고 :

- 1.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 장에 적용한다.
- 1구획은 숭융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 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.
- 3.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가. 1급지: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 장으로써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주 차장
 - (1) 4대문 주변지역:사직로·율곡로· 왕산로·다산로·왕십리길·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
 - (2) 신촌 지역:경의선철도·경의선철 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·대흥로·용 산선철도·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 고 있는 주차장
 - (3) 영등포 지역: 경인로·선유로·노들 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 차장
 - (4) 영동 지역: 올림픽대로·도산대로· 언주로·역삼로·효령로·반포로를 연결

- 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 및 봉은사로·영 동대로·테헤란로·삼성로를 연결한 내 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
- (5) 잠실 지역: 올림픽로·석촌호수길· 삼학사실·잠실길·올림픽로·송파대로· 신천동 7번지 11호·11번지-8호·11번 지 7호를 잇는 도로·올림픽로·위례 성길 및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 역과 그 경계도로를 직접 접하고 있 는 주차장
- (6) 천호 지역:선사로·구천면길·천호 동 421번지와 길동 458번지를 잇는 도로·둔촌로·성내동 415번지와 성내 동 108번지를 잇는 도로 및 풍납로 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
- (7) 청량리 지역: 제기로·전농로·배봉 로·하정로 및 정통천을 연결한 내부 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
- 나. 2급지:1급지·3급지 및 4급지를 제외 한 지역의 주차장
- 다. 3급지: 지하철환승주차장 중 상업·업 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

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라, 4급지: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 차장 또는 주거지역 중 주차질서확립을 의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. 주차장

마,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 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 정할 수 있다.

4.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·야간주차요금

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경수시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5. 시장은 자동차 10부계운행(자동차 등록 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 에 운행하지 않는 것)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월정기권을 이용하는 차량이 10부 제문행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회 주차요금 울 적용한다.

10부서운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
									
	, ,	노 상	주 차 장	노외주차장					
구분	2시간까지		2시간초과	월정기권	1회 주차		1થ	월정기권	
	1구획	1구획	1구획	12/8/111	1구획	1구획	주차권	주간	야간
	최초 30분	15분 .	. 15분		최초 30분	15분		T 744	-P-4!
1급지	1천800원	900원	1선800원		1천400원	700원	•	18만원	9만원
2급지	800원	400원	800원	•	800 <i>원</i>	400원	•	10만원	5만원
3급지	. 300 શ	150원	300 શ	• •	300 શ	150ના	•	3만원	1만5천원
4급지	200원	100원	•	2만5천원	200원	100 શ	1천500원	811 원	÷ •≉ *

- 6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 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 의 50을 할인한다.
 - 가.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 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 을 소지한 자
 - 나.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을 제4조계 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·제14호
- 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 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 유공자중서를 소지한 자
- 7. 시장은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 차하는 카품자동차(3인 이상 탑승한 자 동차)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차요금 감면시간 비율 및 대상자 동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신 구조문 대비표

	현	행	:			개	정	
(신 설)				제14조	의2(부설	주차장의	설치비용	산정기준
			*	둥)	시행규칙	제14조의	규정에 의	한 부설주
				차장	의. 설치	세 필요한	비용의	산정기준은
	-			영 7	18조제3	함의 규정	에 의하여	점부된 토
1							-	

71

제14조의2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재공)│제14조의2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) (생 략) 제14조의3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) (생 략) 재14조의4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제14조의5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능) (생 략) (신 설)

현

제18조(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) 시행규 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주차대 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부칠주차장

- 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주차구식은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되 연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. 차로의 너비는 2.5미터 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의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3.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 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 인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4.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17퍼센타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첨부된 토지가액평가서에 기재된 당해 토지 의 평가금액으로 한다.

정

(현행 제14조의2와 갈음)

제14조의4(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) (현행 제14조의3와 같음)

둥)

(현행 제14조의4와 같음)

제14조의6(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의 제공) ①서울특별시·자치구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 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재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강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 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 ②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 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. 〈삭 제〉

보

현 행	개 경
제20조(기존·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)	재20조(기존 시설물을 위한 노상주차장 특례)
①~② (생 략)	①~② (현행과 갈음)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	3
용료의 징수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	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
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, 그 점용료는	
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<u>지방세법시행령 제</u>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	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
용하여 산정한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의 <u>100분의 20</u>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	100분의 5
다.	···
제21조(융자의 대상) ①법 제21조의2제6항	제21조(융자의 대상) ① 법 제21조의2제6항
의 규성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(서울특별	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(서울특별시
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	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
리계정을 말한다)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	정울 말한다)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
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	<u>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
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	1.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
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(건물식	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
또는 기계식)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	고를 한 자로서 인채식(건물식 또는 기계
는 자로 한다.	식)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	2.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
	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
②제1항의 입체식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	②제1항제1호
장의 수용능력의 <u>3배</u> 이상의 규모이어야	2 単
한다.	·····.
제22조(융자의 방법) ①용자금을 신청하고	제22조(용자의 방법) ①
자 하는 자는 <u>다음 각호</u> 의 서류를 첨부하	······ <u>시장이 정하는</u> ······
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.	
1. 노외주차강설치신고서 사본 1부	<u>〈삭 제〉</u>
2. 건축허가서 사본 1부	<u>〈삭 제〉</u>
3. 토지등기부등본	<u>〈삭 제〉</u>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	<u>〈삭 제〉</u>
	<u> </u>

─(개정이유 및 주요골자) I. 개정이유

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자가용이용 억제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

조정하고,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개

정애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 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민영주차

장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되,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하 조정 (별표 1).

- 나.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 시가액 적용(제14조의2).
- 다.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규정 선설(제14조의6).
- 라. 주차용도로점용료를 인근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수하도록 조정(제20초).
- 마.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용자대상에 주차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포함(제21조).
-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주차장법 제9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14조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한의 : 필요 없음

보

고 시

◉서울특별시고시제 1995-69호

공공기관부설주차장유료운영개시 주차장법 제19조의3 및 서울특별시주차 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유료 운영개시함을 고시합니다.

1995. 3. 17

서울특별시장

 지용대상: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청의 부 설주차장

2. 유료 운영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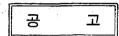
J. 1, JE & 6	l 14					4
구	분	평	일	토	8 5	j
동절기(11	월~2월)	09:00~	17:00	09:	00~13:0	0
하철기(3년	실∼10월)	09:00~	18:00		•	

- 3. 공용개시일: 1995. 3. 20
- 4. 주차요금
 - 갸. 시청:30분당 1,500원, 월정기권 8만 원
 - 나 구청: 30분당 1,000~1,500원 월정기 권 8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급지 및 대중교통수단 접근 용이성 등 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
- 5. 주차요금징수
 - 가. 대상 : 소속공무원 및 시·구청 내방차 량
 - 나. 제외
 - 1) 관용차량,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

- 2) 일반시민-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시간 이내 무료
 - □ 1시간 초과시 초과시간 요금징수 □ 1시간 초과 귀책사유가 공무원예 있을 시 주차요금면제
- 3) 타부처, 시·구의원, 회의참석 외부 인사 등-방문부서 확인에 의하여 무료
- 6. 방치차량: 특별한 사유없이 48~72시간 이상 장기방치시 인근 견인 보관소로 이 동·보관시키며,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는 차량소유주가 부담
- 7. 자동차 훼손·도난의 경우 배상책임

가.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 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 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.

나. 주차장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냥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명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.



- ◉서울특별시공고제 1995-78호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람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562호(89, 12, 29)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의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곳고합니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 담당관(실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며, 이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

고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삼니다.

1995, 3, 17

서울특별시장

가. 인가신청요지

- (1)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(가) 종류 :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
- (나) 명칭:성내역주차장 건설공사 (2) 사업의 면적 및 규모
- (가) 부지면적: 30,264교
- (나) 사업규모 : 공사면적 9.918.7㎡. 주차대수 320대
- (3) 사업시행자의 성명·주소
 - (가) 성명: 삼성건설(주) 대표이사 최훈
 - (나) 주소: 서움특별시 가난구 역삼 **秦 677-25**
- (4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- (가) 착공예정일: 95. 3
- (나) 준공예정일 : 96, 4
- (5) 토지조서 : 별항 ...
- 나. 공람의 일시 및 장소
- (1) 공람일시: 1995. 3.~1995. 3(14일 강)
 - (2) 공람장소: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 차계획담당관(777-9151~2)

토지조서

지 번	지목	지	적(㎡)	소유자	ਖ਼ੀ ਜ਼ੁ
7 7	71 4	대장상	편 입	소유자	-1
송파구 신천동 14	유	30,264	9,918.7	서울특별시	
계		30,264	9,918.7		